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T3-2604-2001
평가금액	144,220,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토우감정평가사사무소 / 홍용석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7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토우감정평가사사무소 / 홍용석	eyJhbGciOiJFUzI1Nils	2026-05-04 21:18: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유한회사엘시아이 소유물건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T3-2604-2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우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홍용석

감정평가액	일억사천사백이십이만원정(₩144,220,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지방세)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한회사엘시아이 (2023-11519-A03)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6.04.30	2026.04.20 ~ 2026.04.30	2026.05.0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93	토지	93	-	144,22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44,22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1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어린이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건임.

2. 감정평가기준 및 근거

본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

4. 감정평가의 3 방식

가.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나.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2

다.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5.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하였음.

6.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인 2026년 04월 30일임.

7.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가.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 착수일은 2026년 04월 20일이고, 가격조사 완료일은 2026년 04월 30일임.

나. 실지조사내용

자세한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토지감정평가요항표” 등을 참고 바람.

8. 기타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대상물건의 개요

1. 토지

(광주광역시 서구, 2025.01.01)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1	풍암동 705	44	대	주거 나지	1종 일주	맹지	부정형 평지	650,300
2	풍암동 705-22	1	대	주거 나지	3종 일주	맹지	부정형 평지	889,300
3	풍암동 705-23	48	대	주거 나지	1종 일주	맹지	부정형 평지	650,500

III. 토지가격의 산정

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가. 개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인근지대 상황,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면적,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 수요, 유용성 등의 제반 가치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4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1)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당해 또는 인접 시, 군, 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이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2) 비교표준지의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 2026.01.01)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풍암동 708-8	338	답	주거 나지	1종 일주	소로 각지	사다리 평지	831,500
B	풍암동 926-1	296.8	대	상업용	3종 일주	중로 각지	정방형 평지	1,574,000

다.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광주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기 간	변동률(%)	비 고
2026.01.01 ~ 2026.03.31	0.042	
2026.04.01 ~ 2026.04.30	-0.006 × 30/31	
누 계 (2026.01.01 ~ 2026.04.30)	0.036	1.00036배

※ 2026년 04월 이후 지가변동률 미고시로, 2026년 03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5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에 관한 결정의견	비교치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이 상호 동일함.	1.00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개별요인	비 교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인근교통시설·상업중심·공공·편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구조, 시장까지의 거리 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등 자연환경(지질, 지반 등), 일조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자연조건	일조, 통풍, 토양, 지세, 방위, 토질 및 관개, 배수의 양부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경작의 편부, 이용상태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6

2)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 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0.80	1.00	1.00	0.93	1.05	1.00	0.78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우세함.						
2	A	0.70	0.90	1.00	0.85	1.00	1.00	0.536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접근성 등), 획지조건(형상 및 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열세함.						
3	A	0.80	1.00	1.00	0.93	1.05	1.00	0.78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우세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개념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을,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를 참작하여 보정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 (1993.09.10 선고 92 누 16300, 2004.05.14 선고 2003 다 38207)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따라 시장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7

2) 산정방법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과 비교사례(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과의 격차를 검토하여 산정하되 인근지역의 거래가능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비교사례(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기준 표준지 가격
 $\text{= 비교사례(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text{=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

(광주광역시 서구)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가액 (원)	사례거래시점
			건물(㎡)				
1	풍암동 7*5-*	대	221	1종일주 (주거나지)	1,628,959	360,000,000	2023.07.07
			-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인근지역 내의 평가사례

(광주광역시 서구)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사례기준시점
1	풍암동 7*5-*	대	551	1종일주 (주거나지)	1,620,000	법원경매
						2025.05.2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8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비교사례(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는 표준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비교표준지와 비교 가능성이 있는 <평가사례 1>을 선정함.

※ 평가사례 1) 기준(표준지A)

구분	비교사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금액		격차율
	1,620,000	1.00366		1.00	1.220	1,983,634		2.385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산출금액			
	831,500		1.00036		831,799			
산정 내역	시점수정	광주광역시 서구 주거지역(2025.05.26 ~ 2026.04.30)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이 동일함.(1.00)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격차율
		1.20	1.00	1.00	1.07	0.95	1.00	1.220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9

※ 평가사례 1) 기준(표준지B)

구분	비교사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금액	격차율		
	1,620,000	1.00366	1.00	1.863	3,029,106	1.924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산출금액			
	1,574,000		1.00036		1,574,567			
산정 내역	시점수정	광주광역시 서구 주거지역(2025.05.26 ~ 2026.04.30)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이 동일함.(1.00)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확지	행정적	기타	격차율
		1.40	1.10	1.00	1.10	1.10	1.00	1.863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접근성 등), 확지조건(형상 및 접면도로 상태 등), 행정적조건(용도지역 등)에서 우세함.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결정의견	표준지	보정치
상기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거래사례, 평가사례, 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A	2.38
	B	1.9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10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기호	공시지가						
1	A	831,500	1.00036	1.00	0.781	2.38	1,546,132	1,550,000
2	B	1,574,000	1.00036	1.00	0.536	1.92	1,620,418	1,620,000
3	A	831,500	1.00036	1.00	0.781	2.38	1,546,132	1,550,000

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가. 개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거래사례

(광주광역시 서구)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가액 (원)	사례거래시점
			건물(㎡)				
1	풍암동 7*5-*	대	221	1종일주 (주거나지)	1,628,959	360,000,000	2023.07.07
			-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인근 거래사례의 선정

상기 거래사례 중 최근의 사례로서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에서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1)>을 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11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결정의견	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과 최근 시세수준을 감안할 때,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0

라.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소재지	용도지역	기간	보정치
광주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2023.07.07 ~ 2026.04.30	1.03223

마.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에 관한 결정의견	비교치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이 상호 동일함.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12

바.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개별요인	비 교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인근교통시설·상업중심·공공·편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구조, 시장까지의 거리 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등 자연환경(지질, 지반 등), 일조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자연조건	일조, 통풍, 토양, 지세, 방위, 토질 및 관개, 배수의 양부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경작의 편부, 이용상태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애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13

2)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 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1	1.00	1.00	1.00	0.93	1.00	1.00	0.93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2	1	1.00	1.00	1.00	0.93	1.10	1.00	1.023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용도지역 등)에서 우세함.						
3	1	1.00	1.00	1.00	0.93	1.00	1.00	0.93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기호	단가(원/㎡)						
1	1	1,628,959	1.00	1.03223	1.00	0.930	1,563,758	1,560,000
2	1	1,628,959	1.00	1.03223	1.00	1.023	1,720,134	1,720,000
3	1	1,628,959	1.00	1.03223	1.00	0.930	1,563,758	1,56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14

3. 시산가액의 조정 및 토지가격의 결정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시산가액(試算價額)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토지단가로 결정하였음.

일련 번호	공시지가기준 단가(원/㎡)	거래사례기준 단가(원/㎡)	결정단가 (원/㎡)	면적(㎡)	감정평가액(원)
1	1,550,000	1,560,000	1,550,000	44	68,200,000
2	1,620,000	1,720,000	1,620,000	1	1,620,000
3	1,550,000	1,560,000	1,550,000	48	74,400,000
소 계				93	144,22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페이지 : 15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분	적용단가(㎡)	면적(㎡)	감정평가액(원)
토지	-	93	144,220,000
합계			144,220,000

2. 결정의견

상기 가격자료에 의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토지가액을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05	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44	44	1,550,000	68,200,000	
2	"	705-22	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1	1	1,620,000	1,620,000	
3	"	705-23	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48	48	1,550,000	74,400,000	
합 계								₩144,220,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어린이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미개발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지세 일련번호 1) ~ 3) 부정형 평지임. 4. 이용상황 일련번호 1) ~ 3) 주거나지임. 5. 접면도로상황 일련번호 1) ~ 3) 맹지임.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일련번호 1)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임. 일련번호 2)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임. 일련번호 3)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 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공부와의 차이	9. 기타
7. 제시목록외의 물건 -. 8. 공부와의 차이 -. 9.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위 치 도

Page : 1



소 재 지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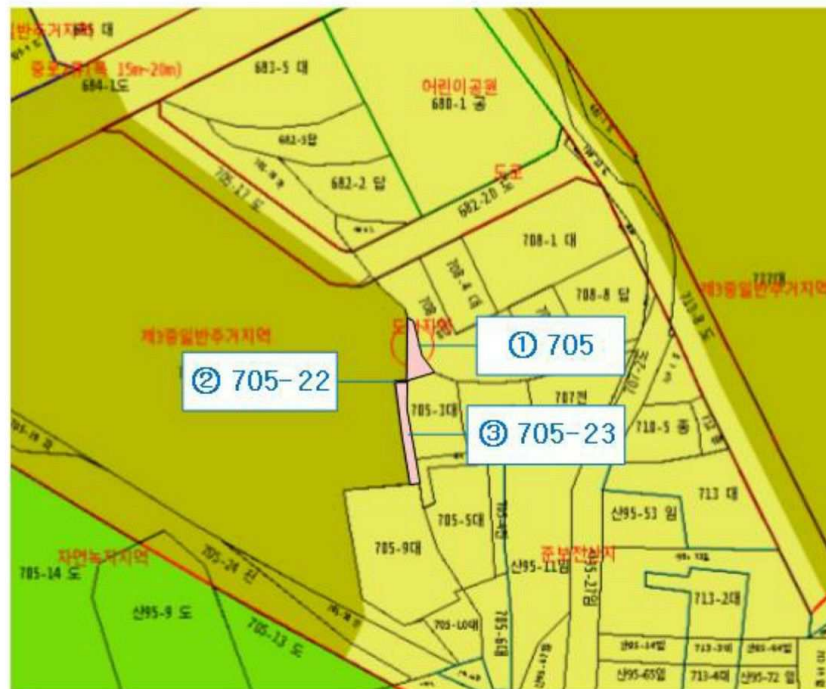


지 적 도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지 적 개 황 도 S: 1/1,200







1)



2), 3)

회보서

우)61735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9번다길 37, 403호(진월동)

TEL. 062-400-0210
FAX. 062-400-0202

문서번호 : T3-2604-2001

시행일자 : 2026-05-04

수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참조 :

제목 : 감정 의뢰에 대한 회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저희 토우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4.20자 귀 제 『2023-11519-A03』 호로 의뢰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05
외 소재 물건 (2023-11519-A03)』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토우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62-400-0210, FAX: 062-400-0202)

문서번호 : T3-2604-2001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4.20 자 귀 제 『 2023-11519-A03 』 호로

의뢰하신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05외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353,642	250,000+94,220,000 x 11/10,000=353,642
실	여 비	40,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7,000	
	기타 실비	4,000	
비	소 계	51,00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404,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40,400	
합 계		444,4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444,400	

불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신한은행
110-375-236651
홍용석

토우감정평가사사무소